

할 수 있다.

일반대부는 대상단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. 공고가 실제로 대부를 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전 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97%에 해당하고 있다. 이외에도 동경도 특별구, 지방자치단체의 일부사무조합 및 지방개발사업단에 대해서도 대부를 행하고 있다. 일반대부는 장기대부, 기채전대, 단기대부의 3종류로 구분되고 있다.

## 2) 공사대부

1972년에 공사대부제도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데, 지방공사중 지방도로 공사 및 토지개발공사에 대해 융자를 행하고 있다.

이는 1960년대에 있어서 도시화의 진전,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생활환경기반정비등 수요의 급격한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사업을 행하게 되는 것을 배경으로 하여 제도화되었다.

## 3) 수탁대부

수탁대부는 농림어업금융공고에서 위탁을 받아 공유림정비사업과 초지개발

사업에 대해서 대부를 행하고 있다. 공유림정비사업은 1960년도부터 시구정촌 및 시정촌이 가입하는 일부사무조합이 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대부가 행해지고 있고 1972년부터 도도부현이 행하는 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다. 또한 1991년부터 分收育林取得資金이 대부대상으로 첨가되었다.

초지개발사업은 1967년부터 시구정촌 및 시정촌이 가입하고 있는 일부사무조합이 행하는 국고보조사업을 대상으로 대부가 행해지고 있다. 1992년부터는 비보조사업도 대부대상이 되고 있으며 1996년부터 도도부현이 대부대상으로 추가되었다.

## 라. 자금조달 및 대부

### 1) 원자 및 자금조달

자금조달의 대종을 차지하고 있는 공영기업채권의 발행액은 대부액의 증대에 수반하여 1957년도의 70억엔에서 1999년 2조 4,742억엔으로 약 353배로 늘어났다. 발행잔고는 1999년말 현재 21조 6,731억엔에 달하고 있다.

이와 같이 증가해 온 공영기업채권의 발행형태별의 경과를 보면, 우선 설립초